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7. 12 선고 2024가단3278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7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,600,000원과 2024. 3. 29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30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최종원

별지